

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 건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15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92. 7. 13

발 의 자 : 산업위원장

1. 주 문

-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도군비에서 확실적인 유지 조정 및 지원 기준의 현실화와 영구적인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할것을 건의한다.

2. 제안이유

- 농산물 재해시 담배 사업법에서는 예상 수납액의 40%선까지 보상이 가능한 반면 농어업
- 재해보상법에서는 피해액의 10%선 정도밖에 지원이 불과함으로 피해 작물에 따라 수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형평유지가 요망되며
- 농민을 보호할수 있는 영구적인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.

3. 참고사항

" 없 음 "

○ 雨雹被害에 對한 補償策 講究

1. 現 況

| 日 時 | 地 域 | 被害面積 | 被 害 額 | 備 考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5. 26 | 忠州市, 陰城郡, 中原郡 | 245 ^{ha} | 16億2千8百萬원 | |
| 6. 18 ~ 19 | 丹陽郡, 堤川郡, 清州市, 清原郡, 鎭川郡, 沃川郡 | 526 | 22億9百萬원 | |
| 7. 2 | 堤川市, 堤川郡 | 199 | 9千萬원 | 정밀조사중 |
| 計 | | 970 | 39億2千7百萬원 | |

2. 問 題 點

- 1) 現行 담배事業法에서는 豫想收納額의 40% 線 補償 可能한 反面
- 2) 農漁業 災害對策法上 에서는 被害額의 10% 線 支援에 不過함으로 被害作物에 따라 受惠衡平性이 缺如되고 있음.

3. 要 望 建 議

- 1) 農作物에 對한 被害補償 基準을 道郡費에서 劃一維持 調整
- 2) 補償 및 支援基準의 現實化
- 3) 恒久的인 農業 災害補償法 制定